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백남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-8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. 9.

발 의 자 : 백남환, 김영미, 김윤정,
김효식, 문정애, 서종수,
송병길, 이봉수, 이필레,
이학래, 전승학, 차재홍

1. 제안이유

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이고,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5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·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나.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관계기관의 협조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안 제6조)

3. 관계법령 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5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입법예고 : 2017. 9.18. ~ 9. 22.(제출된 의견 없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, 형제·자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수사·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

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범죄피해자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범죄피해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관계기관 등 협조)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력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,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범죄피해자 보호법

[시행 2017.3.14.] [법률 제14583호, 2017.3.14., 일부개정]

- 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4조(범죄피해자 지원 등) 제1~3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범죄피해자 지원료 예상비용은 연 40,000천원으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안상협
연 락 처	02-3153-8806